



제424회국회(임시회)
제1차 정무위원회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상습범위반사업자명단공표심의위원회 폐지〉

■ 정부 제출(의안번호 제2207522호)

2025. 4.

정 무 위 원 회

전문위원 황 승 기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정 부
2. 제 안 일 : 2025. 1. 15.
3. 회 부 일 : 2025. 1. 16.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설치·운영 필요성이 줄어든 상습법위반사업자명단공표심의위원회를 폐지하고, 그 기능을 공정거래위원회가 수행하도록 하려는 것임.

Ⅲ. 검토의견

- ☐ 개정안은 상습범위반사업자명단공표심의위원회를 폐지하고 그 기능을 공정거래위원회로 이관하려는 것임.

[illegible]

현행	개정안
된 경우,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자의 명단을 추가로 공개하여야 한다. 1. 2. (생략)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상습법위반사업자 명단의 공표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공무원인 위원과 공무원이 아닌 위원으로 구성되는 상습법위반사업자명단공표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공표대상 사업자에게 명단공표대상자임을 통지하여 소명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통지일부터 1개월이 지난 후 심의위원회로 하여금 명단공표 여부를 재심의하게 하여 공표대상자를 선정한다. ⑤ (생략) ⑥ 심의위원회의 구성, 그 밖에 상습법위반사업자 명단공표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 1. 2. (현행과 같음)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표를 하기 전에 공표대상 사업자에게 명단공표 대상자임을 통지하고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소명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삭제> ④ (현행 제5항과 같음)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 ----- -----.

현행	개정안
제36조(별칙 적용에서 공무원의 제) 제24조의10에 따른 이행관리 업무를 담당하거나 담당하였던 <u>사람</u> 및 제25조의4제3항에 따른 심의위원회 위원 중 <u>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u>	제36조(별칙 적용에서 공무원의 제) ----- ----- -- <u>사람</u> ----- ----- ----- ----- ----- -----.

□ 현행법 제25조의4와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및 제16조는 직전연도부터 과거 3년간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 또는 시정권고를 3회 이상 받은 사업자 중 별점의 누산점수가 4점을 초과하는 사업자는 ‘상습법위반사업자’로 보면서,

이들의 명단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표하도록 하되, 공무원(4명)과 비공무원(3명)으로 구성된 ‘상습법위반사업자명단공표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함)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음.

□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를 두고 연간 2회 이상(2020년 2회, 2021년 3회, 2022년 2회, 2023년 4회, 2024년 2회) 회의를 개최하고 있으며 2024년에는 3개 업체의 사업자명,

대표자, 주소를 공표한 바 있음.

<심의위원회 구성 현황>

(2025년 3월 기준)

위원명	소속 및 직급	비고
안병훈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관리관	당연직(위원장)
문재호	공정거래위원회 카르텔조사국장	당연직
김문식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감시국장	당연직
이병건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거래결합심사국장	당연직
조혜신	한동대학교 법학부 교수	위촉직
양찬희	중소기업중앙회 본부장	위촉직
윤태운	법무법인 선운 변호사	위촉직

※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 개정안은 심의위원회를 폐지하여 정부 운영의 효율화를 도모하려는 것으로 2022년부터 행정안전부가 주도하는 ‘정부위원회 정비 추진계획’에 따른 것임.

☐ 2022년 행정안전부는 636개의 행정기관 소속위원회 중 불필요한 위원회 245개를 폐지·통합하는 정비기준¹⁾을 국회에 제출하였고, 이에 따라 2024년 3월 기준, 총 107개 위원회(폐지 74개, 통폐합 33개)가 정비되었음.

1) ① 장기간 미구성 위원회(법률과 대통령령에 설치 근거는 있으나 수요가 발생하지 않아 1년 이상 위원을 위촉하지 않은 경우), ② 운영실적이 저조한 위원회(최근 1년간 회의 미개최 또는 최근 3년간 연평균 본회의 개최실적이 1회 미만인 경우), ③ 민간위원의 참여가 저조한 위원회(현재 당연직 위원인 공무원으로만 구성되어 있고, 민간위원이 위촉되지 않았거나 민간위원의 수가 2인 이하인 경우), ④ 필요성이 줄어든 위원회(존속기한의 도래, 설치목적의 달성, 행정여건의 변화 등으로 그 필요성이 적은 경우), ⑤ 단순 자문 성격의 위원회, ⑥ 유사·중복위원회

해당 기준에 따라 심의위원회도 정비 대상 위원회로 분류되었고, 이를 현행 상설조직에서 비상설조직으로 전환하여 운영하려는 개정안이 지난 제21대 국회에 정부로부터 제출되었으나, 임기만료 폐기되었음.²⁾

□ 2024년 행정안전부는 정비하지 못한 위원회(119개)와 최근 1년간 개최되지 않은 위원회(1개)를 신규 발굴하여 위원회 정비를 재추진하였고, 개정안도 제21대 국회에 제출되었던 정부안의 내용(상설→비상설)과 다르게 심의위원회를 폐지하는 내용으로 제출되었음.

□ 개정안은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일면 타당성이 있음.

- 먼저, 심의위원회 설치의 필요성에 관한 것으로서 이 법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법정 역할은 다른 법에서 정한 유사한 심의위원회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제한적인 것으로 보임.

즉, 상습법위반사업자명단공표는 법 제25조의4제1항의 법정 기준에 해당하는 예비 공표대상 사업자를 선정(1차 심의)한 후 해당 사업자로 부터 소명자료를 제출받아 심의위원회로부터 별점 감경이 필요한 지에 대한 검토를 받고, 공표대상을 최종적으로 선정(2차 심의)하는 절차로 진행됨.

2) 해당 개정안(의안번호 2117688)에 대한 정무위원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는 상습법위반사업자명단공표 심의위원회의 개최는 명단공표를 위해 의무적으로 개최되어야 하고, 비상설화할 경우 명단공표에 앞서 매번 위원회를 새로 구성하여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으므로 개정에 신중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함.

이에 반해, 상습채불건설사업자 명단의 공표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건설산업기본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국토교통부에 설치된 ‘상습채불건설사업자명단 공표심의위원회’는 시행령 제82조의3제4호 및 제5호³⁾에서 상습채불건설사업자의 명단공표에 대한 광범위한 재량권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 다음으로 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동안 심의위원회의 개최가 연간 2회 남짓에 불과하고, 그조차도 대면 회의가 아닌 서면 회의로 진행되는 등 그 운영이 매우 형식적이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3) 「건설산업기본법」 제86조의4(상습채불건설사업자 명단 공표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직전연도부터 과거 3년간 제34조제1항(제32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제81조 또는 제82조에 따른 처분(불복절차가 진행 중인 처분은 제외하며, 동일한 위반행위로 인하여 2회 이상의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처분 횟수를 1회로 본다)을 2회 이상 받은 건설사업자 중 하도급대금, 건설기계 대여대금, 가설기자재 대여대금 및 건설공사용 부품대금의 채불 총액이 1천만원 이상인 자(이하 “상습채불건설사업자”라 한다)의 명단을 공표하여야 한다. 다만, 상습채불건설사업자의 사망, 실종선고로 명단공표의 실효성이 없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상습채불건설사업자 명단의 공표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상습채불건설사업자명단 공표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2조의3(상습채불건설사업자의 명단 공표 제외대상) 법 제86조의4제1항 단서에서 “상습채불건설사업자의 사망, 실종선고로 명단공표의 실효성이 없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86조의4제1항에 따른 상습채불건설사업자(이하 “상습채불건설사업자”라 한다)가 사망한 경우
2. 상습채불건설사업자가 「민법」 제27조에 따라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3. 상습채불건설사업자가 법 제86조의4제3항에 따른 소명 기간 종료 전까지 채불 대금을 전액 지급한 경우
4. 상습채불건설사업자가 법 제86조의4제3항에 따른 소명 기간 종료 전까지 채불 대금의 일부를 지급하고 나머지 채불 대금에 대한 구체적인 지급 계획 및 자금 조달 방안을 법 제86조의4제2항에 따른 상습채불건설사업자 명단공표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에 소명한 경우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제82조의6에 따라 해당 심의위원회의 제심을 거쳐 명단 공표 대상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5.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습채불건설사업자의 명단을 공표할 실효성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 그러나 개정안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신중한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봄.

- 먼저, 심의위원회의 별점 감경 여부가 명단공표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를 폐지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관한 사항임.

2022년부터 2024년까지의 심의 결과를 살펴보면, 24개 예비 공표 대상 사업자 중 11개 사업자가 심의위원회의 별점 감경으로 명단 공표에서 제외되었다는 점에서 심의위원회의 폐지가 바람직한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

<예비 공표대상 사업자와 최종 공표대상 사업자 비교>

(단위: 개)

연도	예비 공표대상 사업자 수	최종사업자 수
2022년	9	6
2023년	5	2
2024년	10	5
계	24	13

- 아울러 명단공표는 일반 대중에게 공개되는 것이고, 한번 공개되면 그 회복이 매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할 때 공표대상의 선정은 보다 엄격한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고려하여야 함.

개정안처럼 경고, 시정조치 또는 시정권고와 더불어 별점의 감경

여부를 판단하는 주체를 공정거래위원회로 일원화하면 명단공표의 공정성과 합리성 측면에서 비판의 소지가 있을 수 있음.

- 마지막으로 다른 입법례와의 정합성 측면에서 상습적으로 법을 위반한 자에 대한 명단공표 제도를 두고 있는 다른 법률들이 공표 대상의 선정에 신중을 기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 등을 설치함으로써 공표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제도적 장치를 두고 있다는 점도 감안할 필요가 있음.

<상습법위반사업자에 대한 명단공표 심의위원회 운영 현황>

위원회	근거법률(약칭)	목적
상습채불건설사업자명단 공표심의위원회 ⁴⁾	건설산업기본법	하도급대금 등 상습 채불 사업자 명단공표
보험료 정보공개심의위원회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보험료 및 징수금 상습 채납자 명단공표 등
관세정보위원회	관세법	2억원 이상의 고액 상습 관세 채납자 및 관세 포탈범의 명단공표 등
보험료정보공개심의위원회	국민건강보험법	(연금)보험료 및 연체금 등 상습채납자의 명단공표
	국민연금법	
임대인정보공개심의위원회	주택도시보증법	임대인 중 상습 채무불 이행자의 명단공표
지방세심의위원회	지방세징수법	1천만원 이상의 고액 상습 지방세 채납자의 명단공표
국세정보위원회	국세징수법	2억원 이상의 고액 상습 채납자 명단공표

4) 참고로 상습채불건설사업자명단 공표심의위원회는 행정안전부의 정비대상 위원회(통폐합)에 포함되어 있음.

문 의 처
02)6788-5109